

1. 개정이유

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953호, 2024. 1. 9. 공포, 7. 10. 시행)됨에 따라, 그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및 표시 등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등을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술전문위원회 관련 근거 시행령 내용 삭제에 따른 시행규칙 근거 조항 수정(제16조제3항 중 “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기준을 정한다.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”을 “형식승인 기준을 정하고, 그”, 로 수정 등)함
- 나. “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”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(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삭제, 별표 4 삭제,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 삭제)함
- 다.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,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

용(제18조제2항, 제25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사업자등록증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”으로 수정)으로 수정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4. 10. 2. ~ 11. 11.) 예정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 기준을 정하고, 그 내용을 신청인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기준 제정 및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”을 “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업자등록증명

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”을 “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업자등록증명

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”을 “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업자등록증명

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4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 사항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“사업자등록증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”으로, “사업자등록증 사본을”을 “그 서류를”로 한다.

2. 사업자등록증명

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 사항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“사업자등록증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”으로, “사업자등록증 사본을”을 “그 서류를”로 한다.

2. 사업자등록증명

별지 제22호서식의 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 사항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“사업자등록증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”으로, “사업자등록증 사본을”을 “그 서류를”로 한다.

2. 사업자등록증명

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 각각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정량 표시상품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규정(벌칙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)에 따른다. 다만, 자기적합성선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6조(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) ①·② (생략)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기준을 정한다.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신청인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>	제16조(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 기준을 정하고, 그 내용을 신청인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④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기준 제정 및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제18조(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	제18조(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

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사업자등록증</u>	2. <u>사업자등록증명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	제25조(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)
① (생 략)	①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<u>확인</u> 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<u>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</u>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	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<u>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</u>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사업자등록증</u>	2. <u>사업자등록증명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30조(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) ① (생 략)	제30조(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<u>확인</u> 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<u>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</u>	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<u>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</u>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

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	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사업자등록증</u>	2. <u>사업자등록증명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35조(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	<삭 제>
기준)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	
1. 자체정량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기준	
2.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 및 경영시스템에 관한 기준	
3. 정량관리를 위한 문서 및 기록의 관리에 관한 기준	
4. 자체검사 공정, 검사방법 및 검사설비에 관한 기준	
5. 포장공정의 관리에 관한 기준	
6. 부적합 공정에 대한 조치 및 예방조치에 관한 기준	
② 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(이하 “자기적합성선언기준”이라 한다)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	
제36조(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신청) 법 제43조제1항에	<삭 제>

따라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정량표시상품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(이하 “적합성확인기관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도 및 인력현황
2. 자체정량관리시스템 지침서
3. 검사설비현황
4. 자체검사성적서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정량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
5. 최근 3개월의 포장공정관리 및 최근 3개월의 정량측정실시기록

제37조(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발급)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신청된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신청인에

<삭 제>

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부적합한 상품에 대하여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8조(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신청)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
2.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

<삭 제>

에 관한 규정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2. 사업자등록증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확인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9조(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의 발급)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

<삭 제>

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적합성확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

2.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

3. 적합성확인업무 수행범위

③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0조(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) 법 제47조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.

제41조(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)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위반사유와 시정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

<삭 제>

<삭 제>

야 한다.

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기
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
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
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법 제48
조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받은
날부터 10일 이내에 적합성확인
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명령 이행 책임자

2. 자기적합성선언표시 제거 대
상 상품 및 판매 수량

3. 최초 이행일 및 완료 예정일

③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
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 기간
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30일
이내에 그 사실을 적합성확인기
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